

◇ 2026년 시설급여 (1일) 입소자 2.1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인력 배치 기준 급여비용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
요양급여	노인요양시설	93,070원	86,340원	81,540원
비급여	상급침실 이용료(1일)	20,000원		
	식재료비(1식)	4,000원		
	간식비(2회)	2,000원		
	기타	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20%	15%
기초수급권자	0%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12%	9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	6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2026년 세부내역 (30일 기준) 입소자 2.1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인력 배치 기준 급여비용

구 분			금액(원)	내 역
개인 급여비용 ⁽¹⁾	1등급 요양급여비용	일반(20%)	558,420원	93,070원 * 30일 × 20%
		경감(12%)	335,050원	
		경감(8%)	223,360원	
	2등급 요양급여비용	일반(20%)	518,040원	86,340원 * 30일 × 20%
		경감(12%)	310,820원	
		경감(8%)	207,210원	
	3등급 요양급여비용	일반(20%)	489,240원	81,540원 * 30일 × 20%
		경감(12%)	293,540원	
		경감(8%)	195,690원	
개인 비급여비용 ⁽²⁾	비급여 본인부담금		420,000원	식사비 12,000*30 = 360,000 간식비 2000*30 = 60,000 * 상급침실 20,000*30 = 600,000
총 계 (일반)	1등급 총계		978,420원	(1) + (2)
	2등급 총계		938,040원	(1) + (2)
	3등급 총계		909,240원	(1) + (2)
총 계 (감경)	1등급	12%	755,050원	(1) + (2)
		8%	643,360원	(1) + (2)
	2등급	12%	730,820원	(1) + (2)
		8%	627,210원	(1) + (2)
	3등급	12%	713,540원	(1) + (2)
		8%	615,690원	(1) + (2)

◇ 2026년 세부내역 (31일 기준) 입소자 2.1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인력 배치 기준 급여비용

구 분			금액(원)	내 역
개인 급여비용 ⁽¹⁾	1등급 요양급여비용	일반(20%)	577,030원	93,070원 * 31일 × 20%
		경감(12%)	346,220원	
		경감(8%)	230,810원	
	2등급 요양급여비용	일반(20%)	535,300원	86,340원 * 31일 × 20%
		경감(12%)	321,180원	
		경감(8%)	214,120원	
	3등급 요양급여비용	일반(20%)	505,540원	81,540원 * 31일 × 20%
		경감(12%)	303,320원	
		경감(8%)	202,210원	
개인 비급여비용 ⁽²⁾	비급여 본인부담금		434,000원	식사비 12,000*31= 372,000 간식비 2000*31 = 62,000 * 상급침실 20,000*31 = 620,000
총 계 (일반)	1등급 총계		1,011,030원	(1) + (2)
	2등급 총계		969,300원	(1) + (2)
	3등급 총계		939,540원	(1) + (2)
총 계 (감경)	1등급	12%	780,220원	(1) + (2)
		8%	664,810원	(1) + (2)
	2등급	12%	755,180원	(1) + (2)
		8%	648,120원	(1) + (2)
	3등급	12%	737,320원	(1) + (2)
		8%	636,210원	(1) + (2)

◇ 2026년 세부내역 (28일 기준) 입소자 2.1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인력 배치 기준 급여비용

구 분			금액(원)	내 역
개 인 급여비용 ⁽¹⁾	1등급 요양급여비용	일 반(20%)	521,190원	93,070원 * 28일 × 20%
		경 감(12%)	312,710원	
		경 감(8%)	208,470원	
	2등급 요양급여비용	일 반(20%)	483,500원	86,340원 * 28일 × 20%
		경 감(12%)	290,100원	
		경 감(8%)	193,400원	
	3등급 요양급여비용	일 반(20%)	456,620원	81,540원 * 28일 × 20%
		경 감(12%)	273,970원	
		경 감(8%)	182,640원	
개 인 비급여비용 ⁽²⁾	비급여 본인부담금		392,000원	식사비 12,000*28= 336,000 간식비 2000*28= 56,000 * 상급침실 20,000*28 =560,000
총 계 (일반)	1등급 총계		913,190원	(1) + (2)
	2등급 총계		875,500원	(1) + (2)
	3등급 총계		848,620원	(1) + (2)
총 계 (감경)	1등급	12%	704,710원	(1) + (2)
		8%	600,470원	(1) + (2)
	2등급	12%	682,100원	(1) + (2)
		8%	585,400원	(1) + (2)
	3등급	12%	665,970원	(1) + (2)
		8%	574,640원	(1) + (2)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